

2008. 6. 30 (월) 11:00

第127回 忠州市議會(第1次定例會)

第 2 次 本 會 議

條例案審查報告書

- ①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②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總務委員會

條例案審查報告書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①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6.5	2008.6.5	2008.6.27	2008.6.27	총무과장
②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8.6.5	2008.6.5	2008.6.27	2008.6.27	환경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공무원여비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종전의 여비지급 방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준용(안 제3조 신설)

- 시장은 별표1 제1호 라목 적용
- 그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별표 1의 각호 적용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신설(안 제4조 신설)

○ 국내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1 적용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시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다.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함

(안 제5조 제1호 신설)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 (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1.13]

나.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호암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볼 거리를 제공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건축되는 호암공원생태전시관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태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안 제3조)

- 자연생태 체험을 통한 시민환경의식 제고
- 환경교육의 장 제공
- 환경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등

나. 생태전시관의 관람 및 이용은 무료로 함(안 제4조)

다. 생태전시관은 1월1일, 설날, 추석, 월요일 및 시설 관리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함(안 제5조)

라. 생태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행 충주시공무원여비조례는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서 출장자가 정부구매카드로 여행경비를 집행하고 여행이 완료된 다음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가 통용되지 않는 곳에서 증빙서를 갖추는 문제와 운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함에 있어 예산의 지출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춰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안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과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실비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에 대해 정액으로 지급토록 하고자 함이며,

안 제5조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아 그대로 준용할 수 없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제1호는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

하지 않도록 하여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준용할 수 없거나 준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과 지방공무원의 직제에 맞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사항임.

-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종전의 여비지급 방식과 같이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하게 되므로 직원들이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호암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볼 거리를 제공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건축되고 있는 호암공원생태전시관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당연히 제정되어야 할 사항임.

- 안 제4조에서 본 시설의 관람 및 이용료를 무료로 하려는 사항에 대해 현지를 답사한 결과 관람 및 이용료를 징수하기에는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전시될 내용 또한 유로로 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시민의 환경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무료로 관람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위수탁에 관한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라 위수탁을 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면 될 사항이나

본 조례안의 제 규정에 의하면 본 행정재산의 기능인 환경 의식의 제고 및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가 수탁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수탁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질의 · 답변 요지

가.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본 조례가 개정되면 업무부담을 덜 수 있는가?
▶답변 : 다소 덜 수 있을 것임.
- ◎질의 :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나 숙박비의 경우 부족하지 않나?
▶답변 : 현실에 비추어 부족하지만 행안부 지침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재량권이 없음.

나.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질의 :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
▶답변 :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녹색충주만들기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자를 공모하기에는 규모가 작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음 수탁자가 계속 관리하게 될 것임.
- ◎질의 :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답변 : 생태전시관만으로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주변에 설치된 곤충서식지, 수생식물군 등의 시설을 함께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음.
- ◎질의 : 수탁단체만으로 365일 운영이 가능한가?
▶답변 : 환경사랑모임, 숲해설가 등 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등으로 공백이 없도록 하겠음.

5. 심사결과

- | | |
|------------------------------|--------|
| 가.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나.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 원안가결 |

6. 끝 임

- | |
|-------------------------------------|
| 가.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 나.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끝. |